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
----------	----

제출년월일 : '95. 9. 22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이되는 재산과 그 이자율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와 이자율을 규정하여 전면개정 (제22조)

- 5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경우
 -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등에게 토지를 매각할 경우
- 8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경우
 - 대부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자등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경우
 -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제10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잡종 재산 매각대금을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이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

가. 영 제95조제2항 제1호, 제8호, 제9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능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다.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2. 8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

가. 영 제95조제2항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나. 제38조의2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다. 도시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사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라. 영 제95조 제2항 본문 및 영 제9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대상재산 중에서 구청장이 일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 <u>매각대금</u>의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u>재산</u>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u>38조의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2. <u>삭제</u> 3.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백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u> 4. <u>영 제95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제8호 내지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5. <u>천재·지변·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u>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영 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잡종재산 <u>매각대금</u>을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u>재산과 그 이자</u>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u>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u> 가. <u>영 제95조 제2항 제1호, 제8호 제9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u> 나. <u>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영세민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u> 다. <u>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u>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안)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도시재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 가. 영 제95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나. 제38조의 2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다. 도시재개발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중 시.도지사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라. 영 제95조 제2항 본문 및 영 제9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대상재산중에서 구청장이 일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